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. 29 선고 2018가단136488 판결 [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1. 8. 31. 접수 제93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나. 위 같은 등기소 1993. 2. 24. 접수 제16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다. 위 같은 등기소 1993. 4. 30. 접수 제40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라. 위 같은 등기소 1993. 4. 30. 접수 제4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마. 위 같은 등기소 1993. 7. 30. 접수 제7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바. 위 같은 등기소 1993. 8. 11. 접수 제7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사. 위 같은 등기소 1993. 11. 27. 접수 제11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계훈영

별지